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537

발의연월일: 2020. 9. 7.

발 의 자:추경호·홍문표·이명수

서일준・金炳旭・송언석

성일종 · 김정재 · 김희국

윤두현 · 김예지 · 정희용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출 및 국격 제고 등 부가가치 창출의 효과가 큰 영화·드라마·예능 등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으나, 현행 제작비 세액공제의 비율이 해외 주요 국가에 비하여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법 취지 실현과 국내 문화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음.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국내 경기 침체에 따른 문화콘텐츠 산업의 붕괴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콘텐츠산업이 한류 확 산과 유관 산업의 수출을 견인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의 혜택을 확대 하여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사람들이 영상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은 과거에는 정해진 시간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을 TV를 통해 시청하는 것이었으나, 오늘날에는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 다양한 플랫폼에 적재된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고 소비하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동영상서비스 (OTT)의 확산으로 유·무선 인터넷을 통해 영화, TV프로그램, UGC(U ser generated content) 등의 다양한 영상 콘텐츠가 제공되고 있음.

국내에서도 OTT 이용률은 매년 증가(2018년 42.7%, 2019년 52.0%) 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인 넷플릭스, 구글 등은 국내 뿐만 아니라 전세계 각 국의 유료방송사업에 진출해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음.

특히, 전 세계 1위 기업인 넷플릭스의 강점은 뛰어난 콘텐츠 제작역량으로 하우스 오브 카드, 기묘한 이야기, 킹덤 등 대규모 투자를통해 자체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해 서비스하며 시장 지배력을 확대해 가고 있음.

최근 방송업계에서는 넷플릭스 같은 거대 해외자본의 적극적인 국내 진출로 인한 국내 PP 사업자들의 콘텐츠 제작 경쟁력 상실과 콘텐츠 시장 종속 등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영상 콘텐츠소비가 OTT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국내 OTT 사업자들의콘텐츠 개발역량을 강화하고 제작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마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특례의 공제율을 3%(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에서 5%(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로 확대하는 한편, OTT 사업자인 내국법인이 OTT 콘텐츠를 제작(OTT 사업자가 아닌 제작자가 OTT 사업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가 적용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국내 콘텐츠산업이 변화하는 인터넷·미디어 환경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여 수출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5조의6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을 "2023년"으로,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 는 100분의 7,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의 100분의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

제25조의6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및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상콘텐츠가처음으로 판매·제공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부 또는 일부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부가통신사업 내국법인"이라 한다)이 이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정보통신망에서 이용자에게 판매·제공하기 위하여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부가통신사업 내국법인에 판매·제 공하기 위하여 영상콘텐츠(정보통신망에서 이용자에게 판매·제공 되는 영상콘텐츠에 한정한다)를 제작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영상콘텐츠의 제작비용을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혂 했 개 정 아 제25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제25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 에 대한 세액공제) ① -----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22 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 송프로그램 및 영화(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에서 발생 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영상콘텐 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3(대통 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5(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 중소기업 경우에는 100분의 10, 중소기업 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 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상콘 텐츠가 처음으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된 과세연 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 세에서 공제한다.

1.·2. (생 략) <u><신 설></u> 1. • 2.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3년 12 월 31일까지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의 100분의 5(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 는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 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 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해당 영상콘텐츠 가 처음으로 판매·제공된 과세 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 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영 상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부 또는 일부의 비용을 지워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인 내국법인 (이하 이 조에서 "부가통신사업자인 업 내국법인"이라 한다)이 이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정보통신망에서 이용자에게 판매·제공하기 위하여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

- ② <u>제1항</u>을 적용받으려는 내국 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 야 한다.
-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영상콘 텐츠의 범위, 제작비용의 계산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